

에 있어 민원이 계속 야기되는 바, 우선순위 선정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다. 처리의견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가 시정 또는 처리하고 그 결과를 '94. 1. 31.까지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며, 건의사항은 금후의 정책입안, 수립, 시행과정에 적극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7. 기타 특기사항

• 수범사례

지적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확한 집주소 찾아주기"는 우리구만이 실시하고 있는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바, 관계직원 표창상신등 직원 격려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3년 11월 26일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3. 11. 18. 鄭然宇 議員의 6人

나. 회부일자 : '93. 11. 26.

다. 상정일자 : 제20회 정기회 제2차위원회('93. 11. 26)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鄭然宇 議員)

가. 제안이유

구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할 경우 비회기중에는 일비 및 여비가 지급되지 않는 바 보다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결산검사활동을 도모하고자,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본조례를 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지금까지는 의원이 아닌 결산검사위원에게만 일비를 지급토록 하던 것을 앞으

로는 의원인 결산검사위원에게도 마포구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일비 및 여비를 지급토록 하려는 것임. (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朴寬受)

- 동 조례안은 의원인 결산검사위원에게도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결산검사는 의회와 집행기관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전문적이며 공정한 회계검사를 수행하는 한시적 기관으로의 성격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 비회기중에는 결산검사활동에 있어서 시간적, 경제적 손실에 대한 실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李奉衡 委員) : 非議員인 결산검사위원은 얼마씩 지급되었나?
- 답변요지(專門委員 朴寬受) : 우리 구의회는 비의원인 결산검사위원은 없었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0	제출년월일 : 1993년 11월 발의자 : 鄭然宇議員의 6인
----------	-----	--------------------------------------

1. 개정이유

의원인 결산검사위원에게도 실비를 변상함으로써 원만하고 성실한 검사활동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지금까지는 의원이 아닌 결산검사위원에게만 일비를 지급토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원인 결산검사위원에게도 마포구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일비 및 여비를 지급토록 하려는 것임. (안 제7조)

3.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17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제1항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실비변상) 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 작업일과 본회의 출석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검사위원인 경우에는 지방의회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일비와 여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자료제공 및 협조) “생략”</p> <p>제7조(실비변상) ①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에게는 결산검사 작업일과 본회의 출석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하여야 한다.</p> <p>② 실비와 여비에 대해서는 공무원국내여비지급규정 및 특근비 지급예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p> <p>제8조(비협조에 대한 조치) “생략”</p>	<p>제6조(자료제공 및 협조) “현행과 같음”</p> <p>제7조(실비변상) 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 작업일과 본회의 출석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검사위원인 경우에는 지방의회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p> <p>② 일비와 여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p> <p>제8조(비협조에 대한 조치) “현행과 같음”</p>